

무배당 원화고정납입특약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제 2조 [계약의 임의해지]
- 제 3조 [용어의 정의]
- 제 4조 [주계약 기본보험료 부족시 보전에 관한 사항]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 제 5조 [특약의 보험료]
- 제 6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 납입]
- 제 7조 [원화고정보험료 납입유예]
- 제 8조 [원화고정보험료 재산출]
- 제 9조 [특약 보험료의 처리]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 제10조 [보험금 지급사유]
- 제11조 [해약환급금]

제4관 통화환산에 관한 사항

- 제12조 [보험계약의 기준통화]
- 제13조 [원화환산 및 외화평가기준일]
- 제14조 [원화환산율]
- 제15조 [보험료 납입에 대한 통지]

제5관 기타 사항

- 제16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 제17조 [주계약 약관의 준용]

무배당 원화고정납입특약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③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 [계약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뜻을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화고정보험료”이라 함은 이 특약이 부가된 시점의 주계약 기본보험료와 이 특약의 제1회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고정(固定)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원화고정보험료 재산출”이라 함은 이 특약이 부가된 주계약의 기본보험료가 “원화고정보험료”의 외화평가 금액보다 크고, 이 특약의 적립금이 주계약의 기본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원화고정보험료를 재산출하여 “신(新)원화고정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신(新)원화고정보험료”라 함은 원화고정보험료 재산출 시점의 특약보험료와 동일 시점의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고정(固定)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4조 [주계약 기본보험료 부족시 보전에 관한 사항]

- ① 원화고정보험료의 외화평가 금액이 주계약의 기본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이 특약의 적립금에서 공제하여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부족한 금액(주계약 기본보험료의 부족한 금액에 해당하는 유지비와 수급비 제외)을 보전합니다.
- ② 해당월 원화고정보험료의 외화평가 금액이 주계약의 기본보험료보다 적고 해당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이 특약의 적립금이 주계약의 기본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익월 10일까지 이 사실을 통지하며, 계약자는 회사의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아래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자의 선택이 없을 경우에는 “원화고정보험료 납입유예”를 선택한 것으로 합니다.

1. 원화고정보험료 납입유예
2. 원화고정보험료 재산출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5조 [특약의 보험료]

- ① 이 특약의 제1회 보험료는 이 특약이 부가된 시점의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25%에 상당하는 해당 외화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제2회 이후 보험료는 매회 납입하는 “원화고정보험료”를 외화로 평가한 금액 중 주계약의 기본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제6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 납입]

- ①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승낙일부터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 중 납입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특약이 부가된 주계약의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와 특약의 보험료를 원화로 환산하여 납입합니다.
- ③ 이 특약의 보험료는 해당 월 주계약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원화고정보험료 납입유예]

- ① 원화고정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하 “납입유예기간”이라 합니다)
 1. 납입유예기간은 원화고정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에 도래하는 원화고정보험료 납입기일부터 1년으로 합니다.
 2. 계약자는 1회에 한하여 납입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납입유예기간 연장은 계약자가 납입유예기간 종료 15일전 또는 회사의 납입유예기간 종료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납입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 납입유예기간 중 보험계약의 효력
 1. 납입유예기간 중에는 주계약의 해약환급금에서 필요한 주계약 위험보험료와 주계약 유지비를 공제하여 대체합니다.
 2. 납입유예기간 중 주계약의 해약환급금에서 주계약의 위험보험료와 유지비를 더 이상 공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화고정보험료 납입유예를 중지합니다.
 3. ‘2’호에 의하여 원화고정보험료 납입유예가 중지된 경우, 회사는 원화고정보험료 납입유예가 중지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지하며, 계약자는 회사의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원화고정보험료 재산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자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4. 납입유예기간 및 원화고정보험료 납입유예가 중지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납입유예기간 종료 및 새로운 보험료 납입기일 통지
 - 1.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자에게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및 새로운 납입기일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 2.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중 2개월 이상 원화고정보험료의 외화평가 금액이 주계약의 기본보험료보다 큰 경우에는 납입유예를 중지하고 원화고정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 ④ 주계약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및 연금개시나이 변경에 관한 사항
 - 1. 보험기간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연장합니다.
 - 2. 납입기간 및 연금개시나이는 납입유예기간만큼 순연합니다.
 - 3. ‘1’호 또는 ‘2’호의 적용에 따라 변경후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또는 연금개시나이가 주계약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사업방법서 내에서 변경합니다.
 - 4. ‘1’호 또는 ‘2’호에도 불구하고 단기납의 경우에는 계약자 신청에 따라 보험기간 및 연금개시나이를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원화고정보험료 재산출]

- ① 원화고정보험료 재산출은 제4조(주계약 기본보험료 부족시 보전에 관한 사항)에 의한 “원화고정보험료 재산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도래하는 보험료 납입 해당일에 주계약 기본보험료와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25%에 상당하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고정(固定)한 금액을 “신(新)원화고정보험료”라 합니다.
- ③ 매회 납입하는 “신(新)원화고정보험료”를 외화로 평가한 상당 금액 중 주계약의 기본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 특약의 계속보험료로 합니다.

제9조 [특약 보험료의 처리]

- ① 이 특약의 납입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책임준비금은 이 특약의 순보험료를 주계약의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된 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 [보험금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계약자 적립금을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11조 [해약환급금]

- ①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통화환산에 관한 사항

제12조 [보험계약의 기준통화]

이 특약이 부가된 주계약 및 특약의 보험료를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할 때 사용되는 통화는 대한민국 법화(이하 “원화”라 합니다)로 합니다.

제13조 [원화환산 및 외화평가기준일]

- ① 이 특약을 부가하는 경우 원화 환산 및 외화 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은 원화고정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직전일 영업일(이하 ‘원화환산 및 외화평가 기준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원화환산 및 외화평가 기준일’은 회사가 거래하는 주된 은행(이하 “주거래 은행”이라 합니다)의 영업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원화환산 및 외화평가 기준일’이 주거래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주거래 은행의 직전 영업일로 합니다.

제14조 [원화환산 및 외화평가율]

‘원화환산 및 외화평가 기준일’에 주거래 은행이 고시(최종고시환율)하는 외국통화별 대고객 전신환매도율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환산율을 ‘원화환산 및 외화평가율’로 합니다.

제15조 [보험료 납입에 대한 통지]

회사는 이 특약의 약관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 및 외화로 평가된 보험료를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5관 기타 사항

제16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계약자에 의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금은 인출 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주계약 약관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